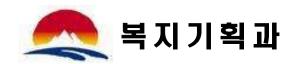




# 김천시 보훈수당 시행지침

□ 참전명예수당(도비·시비)
□ 보훈예우수당(도비·시비)
□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□ 사망위로금



## 김천시 보훈수당 시행지침

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능력 상실로 기초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현실을 위로하고, 보훈선양 및 생의 마지막까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.

## 1 관련법규

- 국가보훈기본법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
-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2 사업개요

구 분	지급방법	지급금액(원)		ш ¬
구 분		도비	시비	비고
참 전 명 예 수 당	매월	100,000	200,000	· 6·25, 월남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족 · <mark>도비, 시비 인상</mark> (도비 6만원 → 10만원) (시비 10만원 → 20만원)
보훈예우수당	매월	50,000	100,000	· 국가보훈대상자 · 도비 보훈예우수당 신설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	매월	0	50,000	· 사망한 6·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참 전 유 공 자 국가보훈대상자 사 망 위 로 금	사망 시 1회	0	400,000	·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- ※ 참전유공자(6·25, 월남전): 참전명예수당(도비) + 참전명예수당(시비)
- ※ 전몰군경유족, 6-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: 참전명예수당(도비) + 보훈예우수당

## ▮ 참전명예수당(도비)

-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족,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  - 단,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함
  - 참전유공자 : 참전명예수당(시비) 병급 지급
  - 전몰군경유족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: 보훈예우수당 병급 지급 ※ 참전명예수당(시비) 지급 대상 아님.
    -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모두 제출

## ▋ 참전명예수당(시비)

■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####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###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6·25전쟁"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 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- 2. "참전유공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가. 6 · 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- 다. 6 ·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#### ■ 지워 제외자

-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
- 「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

## 🔲 보훈예우수당(시비)

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
####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의2(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(이하 "수당 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
- 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3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#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- 1. **순국선열**: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- 2. 애국지사: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- 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・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- 5. **순직군경**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・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・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・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·재산 보호와 <u>직접적인 관련이 있는</u>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
- 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  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- 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사람은 제외한다)
- 10. 참전유공자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 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- 11. **4·19혁명사망자**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- 12. 4·19혁명부상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13. 4·19혁명공로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- 14. 순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15. 공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16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- 17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- 18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###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
- 1. **재해사망군경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2. **재해부상군경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 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- 3. 재해사망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재해부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#### 5 ·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(이하 "5·18민주유공자"라 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- 1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·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
- 2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이하 "장해등급"이라 한다)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
- 3.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: 5·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

####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3조(적용 대상자)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·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.

####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**제3조(적용 대상자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- 1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(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2. 특수임무부상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- 3. 특수임무공로자: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

### ■ 지워 제외자

-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
- 「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<u>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</u> ※ 예외 : 전몰군경유족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참전명예수당(도비)과 보훈예우수당 병급 지급
- "지원대상자" ※예시) <u>지원</u>공상군경
  ※ 자세한 사항은 본문 붙임1) 국가보훈수당 지급제외자 참조
-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  - 전몰군경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함

## 보훈예우수당(도비) - 2025년 신규

- 「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8조에 따른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4.19유공자, 5.18유공자
  - 자격조건 : ①65세이상 ②참전명예수당(도비)을 받지 아니한 자
  - 지급기준 : 월 5만원/1인
    ※ (2025. 1. 1.기준) 김천시 전상군경 3명, 무공수훈자 1명, 특수임무유공자 1명
  - 이외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·시기 등은 기존 보훈수당과 동일

### **-**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- 사망한 참전유공자(6·25, 월남전)의 배우자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- 지원 제외자
  - 「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
-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  - 전상군경 등의 **추가적인 자격이 <u>없는</u> 참전유공자 단일자격인 자**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  - 전상군경 등의 추가적인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서 승계가 되기 전까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가능(승계 후 보훈예우수당 신청 필수)

## 🧾 사망위로금

-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둔 자
  - 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- 지급대상
    - 지급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 (1순위: 배우자, 2순위: 자녀, 3순위: 부모)
    -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신청 시, 자녀 간 합의 후 1인 신청 안내
  -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
    - 접수 전 반드시 사망자 보훈자격 및 사망일자 확인
    - <u>전몰군경유족</u>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아닌, <u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</u>

    - ※ 전상군경 등의 <u>자격이 추가로 있는 경우</u>, 보훈청에서 <u>유족 승계 가능</u> 하므로 <u>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</u> (승계 전까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가능)
    - ※ 추가적인 자격이 없는 참전유공자 단일자격인 자가 사망한 경우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안내

## 4 사업 세부사항

● 지급방법 : 신청에 의한 지급

● 지급절차

대상자 신청 및 접수 (읍면동) 적격여부 검토, 보훈업무 시스템 신청등록 및 보고 (읍면동)

매월 20일 지급 (시)

- **지 급 일** :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(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- 지급기간 :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(사망 또는 전출한 달까지)
  - ※ 예시) 2025년 1월 2일 사망 → 참전명예수당(1월분) + 사망위로금(1회) 지급2025년 3월 31일 관외전출 → 보훈예우수당(3월분) 지급
- 신청접수 보고방법
  - 새올행정시스템 보훈업무 <u>신청등록관리</u>에서 자격유효여부 및 주소지 확인 후 등록(붙임2 새올행정시스템 보훈업무 사용자매뉴얼 참고)
  - 보훈수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공문과 함께 스캔·첨부하여 해당 신청자 보고 서식(붙임4)과 함께 제출(원본 읍면동 보관)
  - <u>사망위로금</u>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공문과 함께 스캔·첨부하여 해당 신청자 보고 서식(붙임5)과 함께 제출(원본 시청 제출)
- 신청 시 제출서류
  -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
    - 지급신청서 1부(또는 대리수령 신청서\*)
    -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 ※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: 보훈청 FAX민원 신청
    - 통장 사본 1부
  - \*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(유족) 본인 신청(또는 수령)이 불가능한 경우, 대리수령 신청서(붙임) 및 관련서류 제출
   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
    - ·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
    - ·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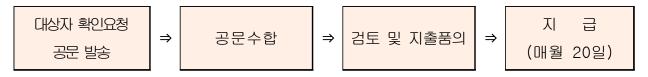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, 사망위로금
  - 지급신청서 1부
  - 사망 확인 서류(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) 1부
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-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 ※ 국가유공자·참전유공자 확인서 : 보훈청 FAX민원 신청
  - 통장 사본 1부

### ● 기타사항

- <u>붙임3 신청서식을 민원실에 배치</u>하여 전출입 및 사망처리 시 보훈대상자 즉시확인 및 신청 안내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와 협조체계 구축 (주민등록 전출입 및 사망 처리 시 국가유공자 확인될 경우 보훈 담당자 알림 必)
- 보훈수당은 복지급여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복지급여 압류방지통장은 입금계좌로 지정 불가함(신청접수 및 계좌변경 신청 시 확인 요망)

## 5 행정사항

● 보훈수당 월별 확인조사 시행 철저



- 조사결과 변동사항은 수합하여 매월 기한 엄수하여 시에 일괄 보고
  - 월별 확인조사 시 사망자 확인될 경우 즉시 보고 및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
  - 사망자 및 사망의심자의 경우 한번 누락된 경우 계속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월 조사 시 재확인
  -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, 문제점 발생 시 조기 보고
- 전입 보훈대상자 관리(붙임2 새올행정시스템 보훈업무 사용자매뉴얼 참고)
  - 새올행정시스템 보훈업무 '전입보훈대상자관리'에서 전입한 보훈 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청안내·처리
  - 신규신청 시 '신청등록관리'에서 등록

## 국가보훈수당 지급 제외자

### 국가보훈수당 지급 제외자-지원보상대상자

구.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(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보상) 제1항은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등에 해당하는 자(예.지원공상군경)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서,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수행 중 부상이 인정되어 보훈청의 예우를 받는 대상자임.

2011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지원공상군경을 포함하는 **제73조2**는 삭제되었으나 기 지원대상자는 부칙 제19조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어 이전과 같이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으나, 국가유공자는 아님.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【부 칙】 제19조(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(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)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